

VIII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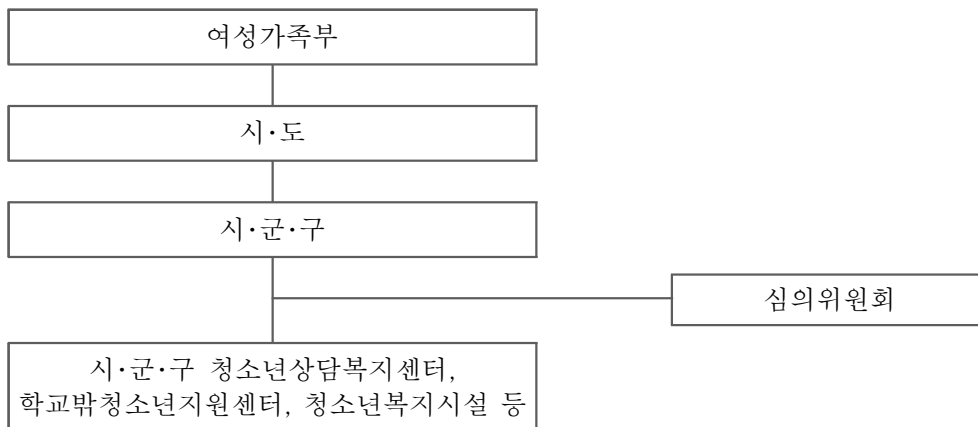
- 위기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자립 등 현금 급여 및 물질 서비스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지원
- * 다만 다른 제도 및 법에 의하여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 한함

1-2 추진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1-3 추진 체계

가. 추진 체계도



1) 여성가족부

- 특별지원 사업 총괄·조정
- 사업 운영 지침 마련 및 보급
- 국고 보조금 확보 및 지원
- 제도 및 법령 개선 등

2) 시·도

- 특별지원 사업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자체 예산 확보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사업 운영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사업시행기관 선정 및 예산 배정
 - 청소년 인구 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 소재지 우선 선정 등
- 특별지원 사업 운영 지도 및 감독
- 예산의 집행 관리
 - 특별지원 사업 운영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등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 관내 학교, 청소년동반자, 청소년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 기관, 지역 주민 대상 등 홍보 강화
 -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 기관과의 연계지원 적극 추진

3) 시·군·구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기존 운영위원회)
-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서 접수
- 신청자의 다른 법에 의한 지원 사실 및 소득수준 조회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차세대 행복e-음) 연계 사업으로 특별지원 사업안내 지침을 복지대상자 조사 담당공무원과 공유하여 지원대상자 판단 시 오류발생 방지
-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지원대상자로 결정 시 사업비 즉시 집행
-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사례관리 계약 의뢰
【서식 제3호】
-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현황 지도·감독
-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복지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를 말한다)에 따라 특별지원 관리 카드를 작성 관리
- 특별지원 사업 홍보 강화

4) 심의위원회

- 구성 및 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 * 서면심의 활용 가능
- 역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5)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 (협력기관)

- 특별지원 청소년 발굴 및 대상자 신청
- 특별지원청소년 상담 및 사례 관리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별 개인기록 관리
- 연계체제 구축 및 홍보

1-4 운영 절차

가. 특별지원 사업 업무 흐름도

절 차	내 용
발 굴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직권 신청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	
신 청	○ 해당 시·군·구(또는 읍·면·동)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접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생활실태 등)
↓	
소득·재산 조사	○ 해당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이 담당 - 38개 항목 확정(소득 14, 재산 21, 공제 3)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 e-음)을 통해 정보연계 조사 ○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사업담당부서로 보장결정 요청
↓	
심의/보장·결정	○ 해당 시·군·구 특별지원사업 담당부서 - 심의위원회를 통한 대상자 선정 * 서면심의 가능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를 거치지 않고 결정가능. 필요시 실무위원회 개최 및 사후심의 (2-5 심의위원회 심의 참고)
↓	
급여·서비스 /통보	○ 해당 시·군·구 특별지원사업 담당부서
↓	
사례관리*	○ 해당 시·군·구 특별지원사업 담당부서 - 사후관리(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사례관리 현황 취합 등) ○ 해당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 상담 및 사례관리 등
변동관리	○ 해당 시·군·구 특별지원사업 담당부서 - 소득 등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
(보장중지 등)	○ 급여 중지 사유 발생 시 특별지원사업 담당부서 - 급여 중지 및 환수 관리
↓	
이의신청 대응	○ 해당 시·군·구(특별지원사업 담당부서) - 소득·재산 조사를 통한 소득인정액에 대한 이의제기

*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및 만족도 조사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평가 및 지도·점검 실시 예정

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지원기준

구 분		내 용
지원대상		• (만) 9세 이상에서 (만) 24세 이하 청소년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신청	신청인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담당 공무원 등 • 신청장소 :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발급자가 신청 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제출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50호(2024.1.1. 시행)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검색·출력 가능
조사 선정 기준	조사 내용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재산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원 및 소득 범위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 동거 조부모, 만 19세 이상 형제·자매 등은 제외
	중복 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 특별지원에서는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구 분		내 용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안내 1. 생활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2. 건강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3. 학업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등을 중복 금지 4. 자립지원 중복 금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심의 위원회	• 시·군·구 자체 계획에 의거 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미 개최 시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서식 제2호】 첨부
지원 내용	종류 및 내용	• 생활지원 :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 월 30만원 이하 • 기타지원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2 특별지원 대상자 신청

2-1 대상자

가. 나이 기준(「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9세 이상 ~ 24세 이하 청소년으로서 나. 선정기준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중에서 선정

나. 선정 기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8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다. 소득 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 이하인 청소년으로, 해당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산정방법과 기준금액에 대해서는 가구원의 소득활동 유형, 가구원 수 및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8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및 기준금액」 (여성가족부 고시 제2022-48호)

-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2-2 대상자 발굴

가. 발굴 경로 및 지원 대상

신청경로	담당자	해당 청소년
당사자 및 가족	청소년 본인, 가족 구성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혜택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의 지원 필요 청소년
학 교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재학생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대안교육시설	교사	정규학교의 학업이 중단된 청소년
소년원, 보호관찰소	보호직 공무원, 보호관찰관	소년원 퇴소자,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쉼터 등)	사회복지사	가정 밖 청소년, 미혼모 등
청소년기관 및 시설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내담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

-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신청은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이 시·군·구에 신청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운영기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복지시설 등)에서 발굴되는 경우 소속기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등이 신청
 - *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기관 담당자가 직접 신청할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서류 구비 후 시·군·구에 신청
-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우선 발굴
 - 학교 밖 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등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 범죄 및 폭력피해 등 위기상황에 처한 자로서 사회적응과 자립을 위하여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자살시도, 약물, 게임중독, 음주, 흡연,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청소년으로 사회적·경제적·복지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사회·경제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3개월 이상) 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학업 등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법 및 제도를 통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신청 또는 지원 중 탈락가구의 가구정보 조회하여 특별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4호)
 - 가정, 학교, 사회복귀가 필요한 청소년

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확인

- 가정 밖, 범죄, 학업중단 등 위기상황의 객관적인 사실 입증은 발굴 단계의 신청인 또는 주변 설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통하여 확인 조사
- 은둔 여부는 청소년동반자 등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여 사례회의를 통한 확인

다.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청소년

1) 청소년 범위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자 또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등과 같이 주민등록상의 문제로 신원확인이나 소득확인이 곤란하고 잦은 이동 등의 사유로 최소한의 관리수단이 미흡하여 지원에서 제외된 자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해당 기관에 입소한 자

2) 특별지원 자격 요건

- 실제거주 요건: 특별지원 청소년이 실제거주지 내에서 최소 거주기간(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실제 거주로 인정하여 지원 자격 부여
- 지속거주 요건: 특별지원 청소년이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 중에 실제 거주지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지속 거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음

3) 처리방법

-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달라 본인 확인 또는 신원 확인이 안 되는 청소년은 거주지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쉼터 등에 의뢰 사전상담 우선 실시

- 상담을 통하여 신원이 확인된 청소년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신청
-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방식에 의거 번호를 부여하며, 업무절차 및 방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지침 준용

4) 관리방안

- 주민등록 말소자, 주민등록 확인불가능자, 실제 거주지 외 주민등록자(비닐하우스 및 판자촌 거주자, 돌아갈 가정이 없는 가정 밖 청소년 등)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복원 시까지 특별지원 청소년 번호를 부여하여 별도 관리
- 주민등록 미식별 대상자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로 관리
 - 주민등록 확인 불가능자 등
 -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 의료급여 전산번호로 관리(의료급여 사업안내 참조)

<예시>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사업 안내)

구 분	전산관리번호 구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	①②③④⑤⑥ - ⑦⑧⑨⑩⑪⑫⑬ ① - ② : 출생년도 마지막 2자리 ③ : 자료구분(5) ④ - ⑥ : 일련번호 ⑦ : 성별(남 : 1, 3 / 여 : 2, 4) 1800년대 및 1900년대 출생(남 : 1, 여 : 2) 2000년대 출생(남 : 3, 여 : 4) ⑧ - ⑨ : 입소년도 마지막 2자리 ⑩ - ⑬ : 시설기호(보장시설 관리번호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부여한 4자리) <예시> '14. 1. 15일 ○○시 감로당(2349)에 입소된 1번째 노인(1930년생, 여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는? ⇒ 3051-2142349

- 시·군·구는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 주민등록이 복원되어 일반 특별지원 청소년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 지도

다. 예외사항

- 쉼터 입소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사례조사 결과 부모의 방임, 폭력 및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소득확인 시 1인 가구로 인정

2-3 특별지원 신청(「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

가.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보호자,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교원, 사회복지사, 공무원 등

나. 신청 장소 및 기간

- 장소 : 주소지 관할 시·군·구(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이 소재한 시·군·구에 신청
 - ** (신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23.3.28.)에 따라 실거주지에서도 신청 가능(’24.2~3월중 시스템 반영 후 적용 예정(대상 사업별 단계적 시행))
 - ※ 복지부 사회보장급여 「실거주지 신청」 지침(안) 일부
 - 실제 거주지에서도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포(3.28)

사회보장급여법 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①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민법」에 따른 후견인,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상담사·청소년지도사, 지원대상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중략)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원대상자의 이용 편의,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유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회보장급여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이 아닌 보장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다.

- (대상사업) 「사회보장급여법」 제2조제1호 및 같은법 제24조에 따라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모든 사회보장급여 사업

○ 기간 : 사업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연중 신청서 접수

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 신청인이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0호(2024.1.1. 시행) 참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정부24」에서 검색·출력 가능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납부영수증)

라. 처리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14일 범위에서 기간 연장)

3 특별지원 선정 조사

3-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및 일반원칙

-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소득인정액은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여 산정함
 - ※ 차세대시스템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로 판단함
- ▶ 소득인정액 산출을 위한 기준, 절차, 방법 등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및 “2023년 사회보장급여 공통업무 안내”를 준용함
 - * 확인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격 확인

가. 조사의 목적

- 지원기관은 급여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의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나. 소득 범위 조사(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재산인정액 자료를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하여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범위 확인(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통합조사관리팀이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른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조사내용 : 소득·재산·공제 등 30여 항목 조사, 금융·부채는 제외

다. 보장결정, 변동관리, 기타 조사 등(특별지원 사업부서)

- 시·군·구 특별지원 사업 담당자가 심의 결정, 지원 대상자 결정·통지 자격 변동 관리, 보장 중지, 환수, 이의신청 등
 - * 소득·재산조사 관련 이의신청 경우 통합조사관리팀의 지원 필요
- 시·군·구 특별지원 사업 담당자는 대상 청소년 선정하기 위해서 다음 사항을 조사
 - 보호자의 유무 및 보호 정도 등 보호자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 생계, 학업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부모에 한정
 - 주민등록 거주지, 친부모, 양부모 등을 구분하지 않고 실제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부모만 가구원에 포함

〈예시〉

1. 아버지가 재혼하여 청소년이 친모와 주거하는 경우, 아버지 가정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친모와 청소년 2인 가구로 산정
2. 지원대상 가구의 청소년(18세 이하 2인)과 부모, 조부모가 주민등록을 동일 주소지에 두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 4인 가구로 산정(조부모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3. 부모가 없는 청소년이 친척집에서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1인 가구로 산정(친척집 가구원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4. 대상 청소년의 **19세 이상** 형제·자매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대상 청소년을 보호할 경우 청소년 1인 가구로 산정(부모의 소득만 조사하므로)
5. 쉼터 입소 가정 밖 청소년 경우 사례조사 결과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쉼터 소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장의 확인서로 1인 가구로 인정

라. 소득기준 산정방법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인정액 확인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근로소득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 소득·재산·공제 총 38개(수기2개) 항목 조사, 금융재산·부채 미포함

- 각 시군구에서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소득·재산·공제 항목 조회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

대	중(소)	세목	대	중(소)	세목
소득 (14)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재산 (21)	일반재산 (토지)	토지(논)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토지(대지)
	재산소득 (임대소득)	임대소득			토지(임야)
		이자소득(국세청)			토지(기타)

대	중(소)	세목	대	중(소)	세목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전월세보증금
		사학퇴직연금급여			상가보증금
		공무원퇴직연금급여		일반재산 (선박/항공기)	선박
		군인퇴직연금급여			항공기
		별정우체국연금		일반재산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수기
		실업급여		일반재산 (분양권)	분양권 *수기
		산재보험급여(휴업급여)		일반재산 (회원권)	골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콘도미니엄회원권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승마회원권
		산재보험급여(상병보상금)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재산 (21)	일반재산 (건축물)	건축물(건물)	공제 (3)	자동차	자동차
		건축물(시설물)			
		건축물(기타)			만 65세 이상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 (주택)	주택			장애인 근로 및 사업소득
	일반재산 (토지)	토지(밭)			만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

마. 일반원칙

1) 전산자료 조회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
 - 복지수급자의 정확한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 소득·재산 자료, 서비스 이력 정보 등을 연계하여 각 지자체에 수시 제공

㉠ 주의사항

- 자산조사는 차세대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통보)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보되는 소득·재산 공적자료 변동사항은 원칙적으로 자동 반영되나, 보유여부만 통보되어 가액 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은 조사·확인 후 반영
 - * 공적자료 변동으로 수급자격 또는 급여액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확인 후 보장증지 또는 급여변동 등 처리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소득·재산 조회 결과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해당 공적자료 제공 기관의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수정 적용
 - * 반드시 증빙자료를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2) 조사자료의 제출요구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현장확인서 등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즉시 제출 가능한 수준으로의 추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음
- 가구원 확인 :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주민등록표, 가출확인서·행방불명 신고접수증 등
- 소득, 취업·퇴직 확인 : 월급명세서, 고용·임금확인서·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등
-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사본, 부채증명원 등
- 기타 : 소득신고서, 매출신고서, 급여통장 사본, 국세청 소득 신고 자료, 직업소개소 취업기록 확인서, 출근부 등

3) 조사수행 주체

- 시·군·구청장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정한 담당 공무원
- 소득·재산 실태조사 시 담당공무원은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현장조사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

4) 관련자료 미제출에 대한 처리

- 특별지원 사업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 시 특별지원대상자가 진술했던 소득, 재산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 등의 증빙 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 사업담당자는 조사자결정 단계에서 심사의 부적합을 결정하고 신청종결 처리하도록 함. 대상자에게 지원중단 또는 기 지원 비용을 환수할 수 있음을 안내

5) 기타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8 준용)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적정성 심사 등을 위한 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이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2 소득조사

가. 개 관

(1) 소득의 의미

- 특별지원대상자의 조사 시 “소득”은 소득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함을 의미함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그 밖의 소득**	-	근로 소득 공제 (일반적인 근로소득은 30% 공제, 65세 이상, 장애인, 24세 이하 수급자 근로 및 사업소득은 50% 적용)
----	---	------------------------------------	---	--

* 국세청에서 이자 확인되는 소득

**공적이전 소득, 일시불이 아닌 매월 정기 소득

(2) 소득산정 기준 시점

- 지원 요청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원칙

(3) 소득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의 범위

(가) 근로소득

① 정 의

○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 다만,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른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외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에 포함

※ 국가근로장학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근로소득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득산정에서 제외(「소득세법」 제12조제3호 서목)

② 유 형

○ 상시근로자 소득 :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③ 조사방법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 결과를 우선 반영

- 조회 결과 여러 기관의 소득 자료가 확인될 경우 다음 순서대로 반영됨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직장가입자 보수월액)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신청」 - 「개인민원」 - 「조회발급」 - 「직장보험료개인별조회」에서 신고된 평균보수 월액을 본인이 확인 가능하므로, 취업자에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보수액 통보 이전에 월보수액 확인이 필요시 동 자료 제출 요청 가능

• 근로복지공단 자료(1. 고용보험, 2. 산재보험)

• 국민연금공단 자료(직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료(장애인고용장려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최저임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신고자료의 장애인근로자 보수월액)

* 장애인 근로자인 경우 해당되며, 확인조사시만 자료 제공

• 국세청 자료(종합소득 중 근로소득)

- 공적자료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 원칙상 공적자료 제공기관의 자료가 수정돼야 하며 적정성 심사를 위해 자료 수정에 대한 입증자료를 요구해야 함
 - 예) 공적자료 조회기준일 이후 실직으로 실제 소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자료 수정한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 시 수정결과 반영
 - 국세청 종합소득이 확인된 자로서 공적자료 조회 기준일 이후 이직한 경우는 고용기관에서 발급한 월급명세서, 고용·임금 확인서, 퇴직증명서 등 공공기관의 입증자료를 확인하여 인정

(나) 사업소득

① 기타 사업소득

㉠ 정의: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농업·어업·임업 소득이 국세청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경우 기타 사업소득에 반영되며, 농업·어업·임업 소득은 별도 수기 확인하지 않음

㉡ 정의: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조사방법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중 사업소득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보유여부가 제공되므로, 이를 통해 사업소득이 있음을 인지하고 대상자에게 성실신고 유도
- 국세청 종합소득자료로 파악이 곤란하거나 과소 파악되는 경우
 - 인적용역제공 사업자(서적·화장품·학습지·정수기방문판매 등)는 본사의 월급명세서 등을 발급·제출하도록 하여 국세청 종합소득과 비교하여 실제소득 반영

(다) 재산소득

① 임대소득

㉠ 정의: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국세청 임대소득을 우선 반영
- 공적자료 조회 결과 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소득 파악

② 이자소득

㉠ 정의: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사방법

- 차세대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조회되는 국세청 이자소득만 반영

(라) 기타소득¹⁾

① 공적이전소득 정의: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② 공적이전소득의 범위

- 타 기관 연계 자료

- 「국민연금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 우체국법」에 따른 연금급여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상병보상연금)

③ 조사방법

-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한 공적자료 연계를 통해 확인된 급여는 자동 반영되며, 조사 과정 중 추가 확인된 급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에 입력하여 소득 산정

1)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의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해 부과하는 부양비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함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추정소득은 부과하지 않음
③ 무료거주하고 있는 경우, 임차료는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

3-3 재산조사

가. 개 관

(1) 재산의 의미 및 산정방식

재산	일반재산	기본재산	소득환산율
=	건축물, 주택, 토지, 임차보증금, 선박/항공기, 자동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회원권 등 * 금융재산을 제외한 재산	* 기본재산액(지역별 공제)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구분기준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의 '구', 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중소도시) 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 도의 '군'	× 연4%

(2) 재산가액 산정기준

- 재산가액은 원칙적으로 공적자료에 의한 가액 적용

재산 항목	산정 기준
•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토지는 지역별 적용율 사용)
•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보정계수(3.5)
•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조합원 입주권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가격에 청산금을 가감한 금액
• 분양권	조사일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 자동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보험개발원 산정 가액 우선적용 후 지방세 차량가액 자료 활용

<참고> 지방세법상 재산종류별 과세기준 산정방식

재산종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토 지			표준공시지가 (국토교통부, 1㎡당)	표준지공시지가×면적
			개별공시지가 (시·군·구청장, 1㎡당)	개별공시지가×면적
건 축 물	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 (국세청, 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국토교통부)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개별주택가격 (시·군·구청장)
	건 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설물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선박/항공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회원권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3) 재산의 종류 및 재산가액 산정에 포함되는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 및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준용)

○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구성원 명의²⁾의 다음 재산을 말함

- ① 지방세법에 의한 토지³⁾, 건축물⁴⁾ 및 주택(제104조제1호에서 3호)
 - 단, 중증재산, 마을공동재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동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관련서류 확인 및 입증자료 시스템에 등록)
- ②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③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
- ④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 ⑤ 100만원 이상의 가축·종묘 등 동산 및 「지방세법」에 따른 입목(제6조제11호)
 - 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등은 제외
- ⑥ 지방세법에 의한 회원권(제6조제14호부터 17호)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회원권, 승마회원권 등
- ⑦ 소득세법에 의한 조합원 입주권(제89조2항)
- ⑧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나. 재산유형별 조사방법(시행규칙 제8조제3항)

(1)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부동산

(가) 정의: 지방세법(제104조1호 내지 3호)에 의한 토지,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축물(지방세법 제104조제2호)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2) 해외체류, 가출, 행방불명, 실종, 군복무, 교도소 등 수감, 보장시설 입소, 사망 후 미상속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 가구에 속하지 아니한 자 명의의 재산을 조사대상 가구의 가구원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이를 재산 가액에 산정하지 않음 → 이 경우 신청이후 재산상황에 대한 소명을 받되 생계가 곤란한지에 대한 확인 필요

- 3) 논·밭·임야 등
- 4) 건물, 시설물 등

- 시설 및 부수시설(지방세법 제6조제4호):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 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 참고 > 유형별 시설종류

- ▶ 레저시설: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
- ▶ 옥외저장시설: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소
- ▶ 도크 및 접안시설:도크, 조선대
- ▶ 급·배수시설:송수관, 급수·배수 시설, 지하수, 복개설비
- ▶ 도관시설: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 ▶ 에너지공급시설: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등
- ▶ 기타시설:잔교, 기계식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 자동차 세차(세척) 시설 등
- ▶ 부수시설물: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기타승강시설, 보일러 등

○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나) 조사방법

○ 토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토대로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함께 제공되는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건축물

- 건물, 시설물: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 주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에 의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주택, 공동주택, 비주거용 건물(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등)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적용

(2) 선박·항공기

(가) 정의 : 지방세법에 의한 선박 및 항공기(제104조제4호 및 제5호)

- 선박 : 기선·범선·부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회전익 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에 보정계수⁵⁾를 적용하여 가격 산정

$$\text{선박·항공기 가격} = \text{시가표준액} \times \text{보정계수}(3.5)$$

※ 보정계수 : 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조정

(3) 자동차

(가) 정의

- 지방세법 제124조 규정에 의한 자동차
 - (종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2톤 이상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은 자동차로 처리하고 그 외의 건설기계(불도저,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등)는 제외

(나) 조사방법

-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 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⁶⁾정보를 반영

※ 자동차가액 평가 기준 우선순위

(1순위) 보험개발원 (2순위) 지방세정 (3순위) 국토부 취득가액* (4순위) 실제거래가격 또는 유사한 종류의 시가표준액

* 최초취득가액×잔가율과 취득가액×잔가율 중 큰 금액

- 전기 또는 수소자동차인 경우, 차량 구입 시 지원받은 보조금(환경부·지자체)

5) 보정계수 :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의 70%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보정계수 3.5를 적용(매년 과표현실화율에 따라 보정계수는 조정)

6)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는 수입가액)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포함한 자동차가액 반영

(다) 조회결과 적용

- 자동차 분실·도난시 ‘자동차말소등록증’을 제출한 경우 재산산정에서 제외
※ ‘차량도난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재산산정 제외 불가

(4) 임차보증금

(가) 정의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나)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주택임차보증금),
국세청 상가임차보증금이 조회되며 아래 규칙에 따라 반영(참고 참조)

참고 임차보증금 시스템 반영 규칙

가. 주택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적용 우선순위 : (1순위) 대법원, (2순위) 국토부, (3순위) LH주택조사 정보
 - 대법원과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임차보증금)이 모두 조회되는 경우, 대법원 자료 우선 적용
 - ※ 대법원 자료는 등기 자료로서, 민사(민법)상 전세권의 인정을 우선 받음을 감안
- 다음의 경우에는 대법원,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적용되지 않고, 주택조사 정보를 반영
 - ① 국토부 전월세거래정보가 없는 경우(미회신) 또는 계약종료일이 지난 경우
 - ⇒ 현재시점에서 계약기간이 유효한 자료만 반영함에 따라 전월세 계약 갱신을 안 할 경우 재산 산정시 누락되는 문제 방지
 - ② 공공임대의 경우
 - ⇒ 성격상 공공임대는 주택조사 정보가 보다 공신력이 있으며, 전월세거래정보는 수급자의 재산이 과다 산정*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조사 정보 우선 반영
 -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지자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지원할 경우, 그 금액이 수급자의 재산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나. 상가 임차보증금

- 국세청 사업소득 신고관리를 목적으로 수집되고 있는 상가임차보증금 신고금액 적용
- 금액정보를 재산으로 적용하되, 다음의 경우에는 미적용
 -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된 경우, 주소정보가 없는 경우, 상가임차보증금정보가 중복으로 조회된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및 범정동 전체주소가 동일한 경우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파악이 곤란한 경우,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점포 등 임차보증금을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등)를 제출받아 확인하여 반영
 -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는 전세권 설정한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 또는 조건의 변경 없이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임차보증금 중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적용률(0.95)을 곱하여 산출

$$\text{주택 임차보증금} = \text{전·월세계약서 상 임차보증금} \times \text{적용률}(0.95)$$

* 보정계수 설정취지 : 주택을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가액산정에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5) 회원권

(가) 정의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골프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으로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콘도미니엄회원권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콘도미니엄과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에 있어서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의 권리
- 승마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승마장의 회원으로서 승마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 요트회원권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요트장의 회원으로서 요트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따라 골프장, 콘도미니엄, 헬스클럽,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 등에 대한 소유여부 확인 및 지방세정의 시가표준액을 반영

(6) 조합원입주권

(가) 정의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분양권으로,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조합원입주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관리처분 계획 등 입증자료를 개별 청구하여 기존 건물의 평가액에 청산금을 정산한 금액(분양가액)을 반영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납부한 금액)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건물평가액에 청산금(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

(7) 분양권

(가) 정의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나) 조사방법

- 분양권 보유여부를 확인하고, 중도금 납입현황 및 개별가격을 조사 후 파악된 금액(조사일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등 불입한 금액)을 반영

가. 신청조사

(1) 조사대상

- 급여를 신청한 지원대상자 가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변동 확인, 필요 자료의 제출요구 및 확인

(2)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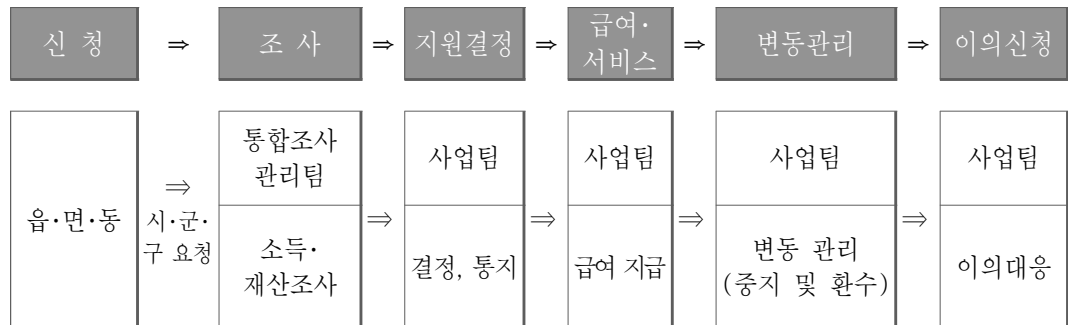
-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재산, 가족사항
- 기타 지원대상자의 위기상황 등 생활실태
 - ※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3) 소득재산 조사 자동화 제외 사유

- 단독 보장신청이 아닌 경우 및 기존 조사가 진행 중인 신청 보장인 경우
 - ※ 예를 들면, 생계급여와 병행 신청하거나 이미 생계급여 소득재산 중인 경우
- 가구원의 변동 발생(출생 및 사망)
- 공적자료 요청 취소 및 수정을 할 경우

< 지원대상자 신청 시 조사절차 >

단 계	업 무 내 용	처리부서
공적자료 조회 요청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적자료 조회 요청	사업담당
공적자료 조회결과 반영	- 공적자료 조회결과 확인 및 반영 - 조회된 공적자료 우선 적용 - 소득·재산·공제 등 소득인정액에 대한 공적자료 확인은 통합조사관리팀이 담당 - 공적자료 조회결과에 대해 신청인이 이의제기 시 공적자료 제공기관 자료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고 입증자료 제출 시 자료 등록 후 수정결과 적용	소득인정액 조사 : 통합조사관 리팀/ 그 외 : 사업담당
자료제출 요구	- 추가 자료제출 요구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급여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	사업담당
조사결과 처리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소득·재산 조사 결과 반영 (통합조사관리팀) - 보장 결정, 변동관리 등은 사업담당자가 처리	사업담당



3. 자료제출 요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지 않는 자료 또는 조회결과와 실제 소득·재산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요구
 - 급여실시 여부 및 급여내용 결정에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요구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나 관계기관으로부터 우선적으로 확보
- 필요한 자료의 제출은 기일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는 급여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제출서류 목록 >

제출 목적	제출 서류	비 고
가구원 확인	- 실종 등의 신고접수서 등	- 행방불명자는 가구원에서 제외 ※ 전산 확인이 가능한 군복무확인서, 재소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는 제출서류 제외
소득확인	- 고용·임금확인서 - 월급명세서	- 근로소득 파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퇴직증명서	- 취업·퇴직사실 확인
	- 소득금액증명원 - 휴·폐업 확인서	- 사업자 소득 파악 ※ 사업자등록증 전산 확인 가능
	- 어종별 출하량 및 수입관련 자료 - 임산물 유통기관 판매기록	- 어업소득 파악 - 임업소득 파악
	- 임대차 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대소득 파악(건물·상가, 본인 거주 외 주택 등이 조회 된 경우)
재산확인	- 임대차계약서(전·월세계약서) ※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	- 임차보증금 파악

4. 조사수행 및 조사 거부 등에 대한 처리

- 지원기관의 시·군·구 사업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수행
- 관할지역 외에 거주하는 급여신청자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공부상 자료로 조사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 소득·재산 전산조회나 급여신청자 면담 등으로 파악이 가능한 사항은 최대한 자체적으로 확인
- 지원대상자가 조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2회 이상 거부·방해·기피할 때에는 신청을 각하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으로 지급을 정지 할 수 있음
- 지원대상자의 선정과 관련한 소득·재산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에도 조사 거부·방해·기피에 해당함

5. 유의사항 및 행정사항

(1) 유의사항

- 신청서 작성, 구비서류 및 추가자료 제출 등은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안내 하고 가급적 추가 방문 최소화
- 공적자료 조회 결과 추가로 제공 가능한 급여 및 서비스를 검색하여 안내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 별도신청서 작성 없이 추가 신청

(2) 행정사항

- 개인정보의 보호(법 제12조의2제4항)
 - 조사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급여결정 등 지원목적에 직접 이용하는 것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할 수 없음
- 조사의 목적을 충분히 인식하여 조사대상자의 허위진술, 지원대상가구의 조사 누락, 조사표 부실기재 등의 사례가 없도록 조사 및 확인에 철저를 기해야 함
- 조사 시 공부나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더라도, 사실조사 결과를 중시하여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소득·재산 공적자료 종류 및 통보주기 >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소득	근로 소득	상시 근로소득	건강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소득신고)	7월	전월 표준보수월액	매월
			고용, 산재보험 보수월액	4월	전월 보수월액	매월
			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임금내역 * 확인조사시만 제공	매월(수시)	전월 보수월액	연 2회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10월	연말정산된 근로소득/12	연 2회
	사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자영업자)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 사업자등록증	수시	신규사업자등록자료	연 2회
			* 소유사업장 직원수	수시	소유사업장의 직원수	연 1회
	재산 소득	임대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12	연 2회
		이자소득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10월	이자소득/12	연 2회
	기타 소득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급여	4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사학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공무원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국방부퇴직연금급여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별정우체국연금	1월	전월 지급된 연금급여	매월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실업급여	매월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비정기	전월 지급된 산재급여	매월
재산	일반 재산	토지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 국토교통부 지적대장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토지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월

구분	조사항목	공적자료	원천기관 변경시기	정보시스템 통보내용	공적자료 입수시기 (주기)*
	건축물 (주택, 건물, 시설물)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 국토교통부 건축물대장 (시설물제외)	수시	전월에 변동(취득, 매각 등) 된 건축물 현황 ※ 매각 현황 제공	매주
	선박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연 2회 (취득세 : 매월)
	항공기	지방세정(재산세, 취득세)	• 재산세 : 10월 • 취득세 : 수시	• 재산세 : 시가표준액 • 취득세 :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 (취득가액)	매월
	회원권	지방세정(취득세)	수시	전월에 취득한 물건의 시가표준액(취득가액)	매월
	임차보증금	전월세 임차보증금(국토부)	수시	세입자 임차보증금액	매월
	분양권	* 분양권(국토부)	수시	분양권 보유정보	매월
	조합원입주권	* 조합원입주권(국토부)	수시	조합원입주권 보유정보	매월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적정보	수시	전월에 취득한 차량정보	연 2회
		보험개발원	분기	차량기준가액	매분기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1월	시가표준액	매년

※ “*” 표시된 항목은 참고자료로 제공하며, 그 외는 자동 반영(일부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

※ 국토교통부 선박원부 및 해양수산부 어선정보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로 확인 가능

※ 【참고】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안정화 전 소득확인 방법 안내

⇒ '24.3.1일부터 “차세대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에서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의 안정적인 사용이 가능 예정임에 따라, 이전에 긴급한 지원 등이 필요할 시에는 건강보험료 부과확인서로 소득 판단 가능

■ 2024년 가족 수·가입유형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부과액 ■

- 기준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노인장기 보험료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683,000	130,901	74,359	132,127	미포함
		147,853	83,988	149,237	포함
3인	4,715,000	167,876	123,611	169,859	미포함
		189,616	139,619	191,856	포함
4인	5,730,000	205,281	156,318	208,153	미포함
		231,865	176,561	235,109	포함
5인	6,696,000	239,074	195,321	243,098	미포함
		270,034	220,615	274,579	포함
6인	7,619,000	271,291	233,543	277,236	미포함
		306,423	263,787	313,138	포함

* 「보건복지 급여·서비스 기준 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2조제4항에 따른 '2024년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판정기준표(기준중위소득)'에 따름

* 1인 가구 산정 : '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보건복지부예규)에 기준 중위소득 100%를 적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 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가)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 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나)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소득신고서 등 확인서 첨부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 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 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4 특별지원 선정 절차

4-1 심의위원회 심의

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5조)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와 통합 운영

1) 역 할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 지원내용 변경, 기간 연장, 중지 등 결정
- 그 밖에 특별지원 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논의

2) 심의 예외사항

- 시·군·구는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 가능(「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 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다만, 시·군·구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더라도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등 지자체에서 설치한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란,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구축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하며, 심의위원회 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자체 내 청소년 관련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음
-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함
 - 쉼터, 사이버 또래상담을 통해 연계된 경우와 같이 가정 밖, 성매매 노출위험 등 보장처리 기한(30일)과 관계없이 즉각적인 현금급여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단, 긴급하게 지원하는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에 한해 3회(3개월)를 원칙으로 하며 급여액과 지원 횟수는 사안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 * 특별지원 긴급지원 시 추후 심의위원회 개최 시 사후 보고하여야 하고, 심의위원회는 긴급한 사안의 지원 중단, 지속, 변경 여부를 결정함
 - * 시·군·구는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시·군·구는 수시 신청의 경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서면 심의 또는 사후 심의위원회 개최가 가능함
 - *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한 후 30일 이내 지원되도록 함

4-2 특별지원 선정 통보

- 시·군·구 사업팀에서 조사한 내용을 차세대 행복 e-음에 등록하면, 시·군·구청장(특별지원사업부서)은 해당 내용을 검토하여 결정내용(적합 또는 부적합)을 즉시 입력
- 시·군·구는 위기 청소년에 대하여 특별지원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요지(지원 내용·금액 및 기간을 포함)를 청소년 본인, 보호자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
 - 시·군·구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에 필요한 내용을 통보
 - 시·군·구는 접수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서식 제1호】** 사본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에 송부(사례관리 대장 관리)

4-3 사후 관리

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차세대 행복 e-음) 정보관리

- 시·군·구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내 청소년업무 중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관리」 항목을 활용하여 신청자 정보 및 특별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등 정보 관리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을 해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 통보하여 사례관리 추진
 - 해당 센터의 사례관리자는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 내용 확인·관리
 - *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이용 관련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공통 매뉴얼 참조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경우, 필요시 지자체에서 직접 사례 관리 가능

나. 특별지원 현황 관리

- 시·군·구는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청소년에 대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라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 중 복지대상자 통합조사표 【별지 제7호 서식】 및 복지대상자 통합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에 기재·관리
-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4호) 참조

다. 대상자 자격 등 관리

-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 또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소득 등에 대한 변동사항을 당사자의 신고 또는 사례관리자의 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파악, 지원변경, 지원중지 등에 반영
-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의 지원 자격 및 종류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사항
 - 특별지원 위기 청소년의 거주지, 생활실태, 위기현황
 - 거주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의 부양능력(소득) 등
-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 시 한 번, 연장 시 지원 자격 변동사항 반영 및 관리
 - * 대상자 지원 도중 시스템을 통해 자격 변동을 알게 된 경우, 지자체 내에서 지원 여부 결정 가능

라. 지원내용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음
- 부양의무자의 근로능력이나 청소년의 위기상황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를 거쳐 급여의 종류·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 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지원중지 결정 가능한 경우: 중지 사유 중 연령기준 초과, 부양의무자의 소득 변동, 취업으로 인한 지원 불필요, 부양의무자 부양사실 확인, 청소년의 연락두절, 주거지 이동 등 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당면중지 사유 등
- 시·군·구에 의하여 변동사항이 확인된 해당 월(중지 결정된 달) 또는 조건을 불이행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지
 - * 정기지급일이 매월 20일인 경우(20일 이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다음 달부터 지원중지)
- 심의위원회의 중지 결정 시 시·군·구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사회보장급여 변경 통지서 【별지 제6호 서식】 송부
 - * 「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54호) 참조

- 시·군·구는 지원 내용의 변경 사항(중지·결정사항 등 포함)을 관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으로 통보

마. 사례관리

- 특별지원 선정 청소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사례관리자와 사례관리 계약서 **【서식 제3호】**를 작성, 개입 과정을 통한 변화 및 자립의지 등 확인(심의 후 대상자 확정 시)
 - 대상청소년과 사례관리자 간의 사례관리 계약서 기재사항 확인
 - 시·군·구는 대상 청소년의 사례관리 계약서 확인 후 예산 지원
 - * 지자체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경우, 필요시 지자체에서 직접 사례 관리 가능
- 지원대상자에 대한 사례관리 실시 **【서식 제4호】** (지원기간 중 2~3회 실시)
- 사례관리 계약서에 정한 내용의 실현 여부에 따라 지원 계속 및 연장 등 결정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명단을 접수하여 사례관리 시행
- 생활지원 이외에 건강·학업·상담·자립지원 대상자는 수시로 공급기관을 모니터링 하여 서비스 이용 여부 확인
 - * 대상자의 거주지 변동, 서비스 이용중단 등 특이사유 발생 시 반드시 지자체(공무원)에 통보
- 지원기간 종료 시 사례관리 중단 또는 상담을 지속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 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청소년동반자 사업, 청소년쉼터 등으로 연계하여 지속적인 상담서비스 지원 유지
- 시·군·구는 특별지원 대상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한 조정역할 실시

바. 지원의 중단 및 환수

- 부당한 방법 또는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지원 결정 내용과 다르게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
 - * 환수 절차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름
 - * ‘청소년 특별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한 지원예시 :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의료지원, 의료급여 본인부담 면제, 초·중·고교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등

5 특별지원 지원내용(「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7조)

5-1 지원내용

가. 지원내용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 교과목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의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의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의 지원
- 생활지원 외에 다른 지원 사업은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직접 입금이 원칙임
-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지원할 경우 사례관리 계약서와 별도로 지원대상자가 해당 사용에 대한 계획 등 특별지원금 사용 약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할 것

나. 중복지원 금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만 지원
* 동일한 내용의 지원만 금지되며, 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동법 시행규칙 제41조의3(보장시설)에 따른 보장시설 이용자의 경우 생활·건강지원 등 동일사항에 대하여 지원 불가

○ 쉼터 등 시설입소자의 경우 관련법에 따른 보조시설로 최소한의 의식주가 보장되는
바, 생활지원 대상은 아님(다른 항목의 유형은 지원 가능함)

- * 쉼터 입소자에 대한 특별지원 긴급지원 예산이 소액인 바 건강지원 등 사유발생 시 지원 가능
- * 주거급여를 받지만,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생활지원 가능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관리 항목 안내

1. 생활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거주(생활보조금 수급자), 쉼터 거주 등
2. 건강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의료급여 1종), 긴급복지(의료지원)
3. 학업지원 중복 금지 : 기초생활사업(교육급여), 긴급복지(교육지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원지원, 초·중·고교 교육비는 일부 지원(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비) 중복 금지
4. 자립지원 중복 금지 :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다. 지원기간

-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음
- * 다만, 학업·자립지원일 경우 두 번까지 연장 할 수 있음(총 3년까지 지원가능)

라. 지원 항목 범위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대하여 가장 필요로 하거나 중요한 1개의 항목에 대한
지원이 원칙임
- * 단,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후보고 가능)를 통해 2개 종류 이상 지원 가능

마. 지원 방식

-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금전지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으로 함
 -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한 기관·시설에 직접 입금 원칙
 - 가정이 있는 청소년에게 금전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가정상황이나 청소년연령
및 성숙도를 고려하여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수급 계좌를 통하여 입금 조치
- 청소년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은 해당 보호
시설에서 관리하도록 함
- 지원 장소는 기본적으로 특별지원 청소년의 주거지에서 실시하되, 아래 경우에는
시·군·구청 또는 타 기관에 위탁하여 지원 가능

- 특별지원 청소년의 일정한 주거지가 없는 경우
- 주거지가 있어도 그 곳에서 지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심의위원회 결정 후 즉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정기 지급일 설정 권장
(매월 20일 등)
- 급여신청일을 개시일로 설정함
 - * 단,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을 급여개시일자로 산정 가능

바. 특별지원 긴급지원의 원칙

- 대상 선정 시 긴급 위기사례 등 시급성이 중요한 관건일 경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제3항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나 ‘분과위원회’ 등 지자체에서 설치한 청소년 관련 위원회를 통해 논의·결정하여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후 심의위원회 보고

가. 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생활 지원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가.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매월 1회
건강 지원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 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연 200만원 이하	1년 또는 매월
학업 지원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교과목 관련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지원 종류	지원 내용	구체적 내용	지원 금액	지원 방법
자립 지원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 기능 등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월 36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법률 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1회 지원
상담 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월1회, 분기별, 1년 등
활동 지원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월 30만원 이하	월1회, 분기별, 1년 등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가.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 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월1회, 분기별, 1년 등

나. 유의사항

○ 생활지원

-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지급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경우 2인까지만 생활지원 가능
(단, 생활지원 외 타 지원은 가능)
- 단, 2인 지급일 경우 1인당 월 589,2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 2.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에 준함)

○ 건강지원

- 의료기관 등이 특별지원 청소년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 의료보험 적용 항목이며 선택 진료, 상급병실 이용 등 생명유지와 관련이 없는 비급여 항목은 지원 불가
- * 비급여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 학업지원

- 지속적인 학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교육비용인 수업료·학교운영비, 검정고시 학원비, 교과목 관련 학원비(온라인 수강비 포함)와 부대비용 지원
- *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미인가 대안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지원 대상자가 학업중인 검정고시 학원 등은 매월 출석 일수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 온라인 학원은 수강자의 IP기록과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제출 의무. 다만, 현실적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수강 대상자가 출석 증빙자료로 제출한 기록도 인정함
- * 학원은 공문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제출
-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수강과 관련한 검정고시를 지원하여야 하며, 학원에서는 응시원서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고 당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함
-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석일수 증빙자료, 응시원서 사본, 합격여부에 관한 실적 등을 관리
- 사설 검정고시 학원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일반 입시학원의 검정고시 과정에 대한 수강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단, 증빙자료는 검정고시 학원과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 자립지원

- 지식·기술·기능 등 자립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훈련비 등을 지원
- 교과목 등 학업 관련 지식이 아님

○ 법률지원

-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의 지원

○ 상담지원

- 병원 및 전문 상담원(놀이·미술·음악치료 가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활동지원

-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위기를 극복하거나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비 지원

<예시>

국토순례, 봉사프로그램, 직업체험 등

-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 문화정보센터 등의 활동프로그램 등
- 연극,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체험
-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 기타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예시>

앞니 빠짐(보철 제외), 사시 교정, 문신 제거, 화상흉터 치료 등

- 청소년의 교복 지원, 체육복, 수학여행비 지원 등
-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등
- 심의위원회에서 지침에 제시한 지원 종류가 아닌 '기타 지원'으로 결정할 경우
제시된 종류와 가장 관련 있거나 비슷한 종류의 지원 금액 상한액 참조
* 단, 위에 열거한(생활·건강·학업·자립·법률·상담·활동) 지원의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지원
하기 위해 기타지원으로 지원 불가

<잘못된 지원의 예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금액이 생활지원비 80만원인 경우. 생활지원으로 65만원 지원 후, 기타
지원으로 25만원을 추가 지원 → (×) 생활지원비로 65만원까지만 지원이 인정되며, 기타지원
으로는 생활비를 추가 지원할 수 없음

가. 예산 배정

-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조율에 따른 예산배정액 외에 추가 예산 반영 권장
- 대상자 조기 발굴 및 선정관리

나. 보조금 예산집행 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연도 마감일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준수
- 사업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항목에 보조금 지출 불가
 -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 없는 항목에 지출 시 환수 조치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다. 보조금 신청

- 시·도지사는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제6호】와 사업 계획서 【서식 제7호】를 당해연도 1월 15일까지 제출

라. 사업결과 제출 및 정산보고

- 시·도지사는 전년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보조금 정산서 【서식 제8호】 및 사업결과 보고서 【서식 제9호】를 익년도 1월 31일까지 제출
- 불용액 발생(이자 포함) 시·도는 세입고지서 발급과 동시에 납입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 등 필요한 조치 강구

		과 목	기 준	비 고
관	항	목		
사 업 비	생활 지원	가.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월 65만원 이하	2024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2인 이상 경우)
	건강 지원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 바. 간호 사. 이송 등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연 200만원 이하	
	학업 지원	가.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중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 및 고등학교졸업 학력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라. 학원비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등)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월 30만원 이하	지방교육청 학교운영지원비 기준 사설검정고시학원 * 일반학원의 검정고시 과정 수강비용
	자립 지원	가. 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가능	월 36만원 이하	
	법률 지원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원 이하	
	상담 지원	가.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비) 연 40만원 이하 (별도 심리검사비)	사설 상담기관 상담비(4회) 신경정신과의 심리평가 비용
	활동 지원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 다. 특기활동에 필요한 경비 라. 교류활동비	월 30만원 이하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심각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지원 등	(위 제시된 유형과 관련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지원금액 상한액 참조)	(청소년 당 2종 이상 지원 가능)

6-3 운영관리 및 만족도 조사·관리

- 여성가족부는 특별지원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와 주기적으로 협의하고, 연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여성가족부는 지도·점검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도에 주의, 경고 조치 및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이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해당 자료를 이송하여 지속적인 사례관리
- 시·군·구에서는 대상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종결되는 시점에 만족도를 조사·분석 관리하여 사업계획에 반영 【서식 제5-1호, 제5-2호 참조】

성과지표	실적 및 목표치	측정방법	비 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 시 【서식 제5-1호】 설문지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 종결 시 【서식 제5-2호】 설문지	

- 【서식 제1호】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서식 제3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 【서식 제4호】 「특별지원 사례 관리」
- 【서식 제5호】 「특별지원 만족도 조사」
- 【서식 제6호】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 【서식 제7호】 「사업 운영 계획서」
- 【서식 제8호】 「국고보조금 정산서」
- 【서식 제9호】 「사업 결과 보고서」
- 【서식 제10호】 「반기별 사업 실적 보고서」
- 【서식 제11호】 「현장조사서」

[illegible]

[서식 제2호]

특별지원 긴급지원 사유서			
※ 특별지원 대상 발굴자 및 긴급지원 신청자가 작성			
수신처 : ()시·군·구청장 귀하			
소속기관/신청인		(성명 :)	연락처
대 상 청소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위기유형	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위기상황		
해당항목 모두 ✓ 표시	1-1. 보호자 유무 및 보호 여부 ① 보호자 유 ☐ (☐ 보호자 보호 ☐ 보호자 실질적 비보호) ② 보호자 무 ☐ (☐ 보호자 비보호)		
	1-2. 위기상황 ☐ 가정 밖 청소년 ☐ 빈곤 ☐ 가정폭력(아동학대) ☐ 정신적 문제 ☐ 조손·한부모가정 ☐ 은둔 ☐ 기타(구체적으로 :)		
	2. 타 법과 제도에 따른 지원여부(가구에 대한 지원 포함) ☐ 기초생활수급자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기타(구체적으로 :) ☐ 해당없음 ※ 중복지원의 경우 동일 유형의 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3. 학업중단 여부 ☐ 재학생(학교/학년 :) ☐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거, 초·중학교 등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 유예, 고등학교 등을 제적·퇴학·자퇴하거나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4. 비행예방을 위해 지원 필요 여부 ☐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1호~10호)을 받았거나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 ☐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폭력·학대 피해청소년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또는 부 ☐ 기타(구체적으로 :)		
	5. 기타 지원필요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쉼터 퇴소(예정)자) ☐ 장애·질환(구체적으로 :) ☐ 정신과적 문제(자살시도, 우울, 중독 등) ☐ 기타(구체적으로 :)		
지원유형	☐ 생활지원 ☐ 건강지원		
긴급한 지원사유			
위 대상 청소년에 대한 긴급지원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발굴자 (인)			

특별지원 사례관리 계약서

나 (청소년의 이름)_____ (는/은) 사례관리계획을 세우는데
참여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 지원 현황 : 지원 종류 및 기간, 내용(금액 등)

목표 1 : _____

하위목표 :

1.1. _____.

1.2. _____.

목표 2 : _____.

하위목표 :

2.1. _____.

2.2. _____.

목표 3 : _____.

하위목표 :

3.1. _____.

3.2. _____.

청소년 : _____ (이름) _____ (서명)
20 년 월 일

사례관리자 : _____ (소속) _____ (이름) _____ (서명)
20 년 월 일

1차 검토 날짜 및 확인	2차 검토 날짜 및 확인	3차 검토 날짜 및 확인

* 목표수정이 있으면 이를 새로운 양식에 기록하여 현재의 양식에 첨부해 주십시오.

[서식 제4호]

특별지원 사례관리			
센터 명			상 담 원
대 상 청 소 년	이름		생년월일
	주소		
대 상 자 유 형	예시) ❶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❷ 학교 밖 청소년, ❸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❹ 은둔형 청소년 등		
사 례 자 상 태			
지원유형	예시) ❶ 생활지원, ❷ 건강지원, ❸ 학업지원, ❹ 상담지원 등		
상담내용			
상담 전후 변화 정도			
20 년 월 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			

※ 지자체에서 직접사례관리가 가능한 경우, 센터명 대신 지자체로, ○○센터 대신 ○○구로 작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에게 생활비, 학업지원비, 치료비 등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나은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특별지원 등을 지원받은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앞으로 효과적인 지원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조사 결과는 여성가족부의 내부 자료로만 사용되고 통계법에 따라 외부로 유출되거나 타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으니, 귀하의 의견을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 성 가 족 부

◆ 각 문항을 읽으신 후 해당되는 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개요 >

지원 대상자	지원내용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기준 중위소득 100% 까지 지원)	종류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생활	①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② 숙식 제공	월 65만 원 이하
	건강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간호 ⑥ 이송 등 기타 조치사항	연 200만 원 이하
	학업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월 15만 원(수업료)
		② 교과서대금	월 30만 원 이하 (검정고시)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④ 학원비(교과목 관련)	월 30만 원 이하
	자립	①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② 진로상담 비용 및 직업체험 비용 ③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월 36만 원 이하
	상담	① 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심리검사비 ② 프로그램 참가비	월 30만 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 원) 별도
	법률	① 소송비용 ② 법률상담비용	연 350만 원 이하
	활동	① 수련활동비 ②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③ 교류활동비 등	월 30만 원 이하
	기타	①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② 교복 지원, 체육복 등 ③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1.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생활비, 치료비, 학원비, 수업료, 상담비, 활동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2.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중 본인이 받은 지원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구분	내용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가	생활지원					
나	건강지원					
다	학업지원					
라	자립지원					
마	상담지원					
바	법률지원					
사	활동지원					
아	기타지원					

2-1. 불만족일 경우 사유를 기재해주세요.

(예) (1) 서비스 기간, (2) 지원 금액, (3) 상담 유형, (4) 추가되었으면 하는 지원, (5) 기타

3.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신청부터 지원 등 처리절차에 대해 만족하나요?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다소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4.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이 위기청소년의 생활안정과 학업 및 진로 지속 등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보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 긍정 ② 긍정 ③ 보통 ④ 다소 부정 ⑤ 매우 부정

5. 지원 신청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또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초기상담 및 사후 지속상담(사례관리)이 도움이 되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6. 나와 비슷한 처지의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에게 추천할 생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요

7.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해 주세요.

□ 청소년 일반사항(해당란에 기입 또는 해당되는 사항에 ✓표를 해주십시오)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나이)	① 9~15세 ② 16세~19세 ③ 20세 ~ 24세
3. 신청 당시 어려움 유형	①비행·일탈 예방 청소년 <① 가출 ② 가정폭력 ③ 범죄 피해 ④ 우울, 자해 등 정신적 문제 ⑤인터넷 중독>, ②학교 밖 청소년 <①학교폭력 ②학업중단>, ③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①부모 부재 ②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 (직접 써주세요 : 저소득 한부모 가족, 부모의 질환이나 정신적 질병으로 본인이 가족을 돌보는 경우, 부모의 경제적 수입이 열악한 경우 등)>, ④은둔		
4. 사업 알게 된 계기	①현재 상담 받고 있는 기관의 선생님 추천으로 ②행정복지센터 등 공무원의 추천으로 ③학교 선생님의 추천으로 ④홍보(홍보물, 인터넷, SNS, 매체를 통한 홍보 포함) ⑤ 기타		
5. 지원 항목 (중복체크 가능)	① 생활지원 ② 건강지원 ③ 학업지원 ④ 자립지원 ⑤ 법률지원 ⑥ 상담지원 ⑦ 활동지원 ⑧ 그 밖의 지원		
7. 신청서 작성한 곳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②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③ 청소년쉼터 ④ 학교 ⑤ 행정복지센터 ⑥ 기타(직접 써주세요 : 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서식 제7호]

20XX년(시·도 및 시·군·구)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계획서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경과

나. 사업지역 현황

○ 인구규모·면적 및 지역특성

* 복지시설 및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추정치 등 지역 상황 기술

다. 관련 규정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

○ 지자체 조례 등

라. 위기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

(지역 자원의 강점을 활용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제시)

2. 사업내용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 사업운영 목표 설정

○ 중점 지원 : ① 생활지원 ② 학업지원 ③ 상담지원....

운영목표	목표치	측정방법	비고
지원대상 청소년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1호 설문지 참조】	
보호자 등 만족도	80점	사례관리 종료 시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서식 제5-2호 설문지 참조】	

3. 소요예산 총괄

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예산 집행계획

(단위 : 천원)

구 분	전체예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지방비에 자부담은 제외하고 작성

나. 총괄표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부담	비 고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다. 항목별 예산지출 계획

(단위 : 천원)

구분		총액	세부 사업명	금액	산 출 내 역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① 세부사업명 ② 세부사업명	① 세부사업 관련 금액 ② 세부사업 관련 금액	

4. 사업평가 계획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예정인 현장점검, 컨설팅 등 사업평가 계획 등 적시

5. 사업홍보계획

* 사업홍보물 제작 시 ‘여성가족부, 지자체 운영’ 반드시 명기

6. 기타 사업운영 관련 추가 계획수립 사항 등

[서식 제8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정산서

1. 보조사업자 :

2.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결산이자		국비반납 금액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 국비 반납금액은 국비 불용액과 국비에 대한 결산이자 잔액 합계액임

* 지방비는 자부담을 제외한 국비매칭액에 대비되는 지방비만 기입요망(자부담 포함 금지)

3. 소요경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총액	국비	지방비	자체부담*	비 고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총 계						

* 총액만 기재, 세부사항은 사업결과보고서에 포함

위와 같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인)

여성가족부 장관 귀하

[서식 제9호]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결과 보고서

1. 사업실적

가. 총 평

- 각 지자체의 해당년도 위기청소년 지원 사업 서비스 제공 특징
- 위기 청소년특별지원 사업 주요 신청 및 지원 확정 현황 등

나. 사업 실적 총괄표

1)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건/원)

[illegible]

<엑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당초 신청한 지원자 수

**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 지원대상자가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1명만 기재(정확한 '수혜자 수' 확인 목적)

○ 특별지원 대상자 유형에 따른 지원 현황

구 분	실지원 인원	지원합계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❶ 비행·일탈 예방청소년	인원																									
	건수																									
	금액																									
❷ 학교 밖 청소년	인원																									
	건수																									
	금액																									
❸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인원																									
	건수																									
	금액																									
❹-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인원																									
	건수																									
	금액																									
❺ 은둔형 청소년	인원																									
	건수																									
	금액																									

<엑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당초 신청한 지원자 수

**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으로 선정된 사람 수

*** 지원대상자가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1명만 기재 (정확한 '수혜자 수' 확인 목적)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

○ 지원 우수사례

-

-

○ 건의사항

-

[서식 제10호]

상 / 하반기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실적 보고서(시·도명)

1. 예산 집행 실적

(단위 : 원, %)

구분		총액 (교부액 누계) (A)	집행액 총액 (B=a+b)	집행액(B=a+b)			집행률 (B/A)
				국 비(a)	지방비(b)	자체부담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총 계							

2. 사업추진 실적

1)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운영

○ 특별지원 신청 및 지원현황

(단위 : 명/건/원)

구분		신청 및 결정현황		지원현황																												
지역 별	신청 인원	청소년복지 심의위원회		확정 인원	실지원 인원	지원합계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상 정 인 원	결 정 인 원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합계																																
																												</				

<엑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 당초 신청한 지원자 수
- **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수
- *** 지원대상자가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1명만 기재(정확한 '수혜자 수' 확인 목적)

○ 특별지원 대상자 유형에 따른 지원 현황

(단위 : 명/원)

구 분	실지원 인원	지원합계	생활			건강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인원	건수	금액	
① 비행·일탈 예방청소년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지원 인원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지원 인원																									
③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지원 인원																									
③-1.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지원 인원																									
④ 은둔형 청소년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지원 인원																									

<엑셀 양식으로 제출해야 함>

* 당초 신청한 지원자 수

** 신청자 중 지원 대상자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을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수

*** 지원대상자가 2종류 이상 지원을 받은 경우 1명만 기재 (정확한 '수혜자 수' 확인 목적)

2. 사업추진성과 및 자체평가(시군구 총괄)

○ 지원 우수사례

-

-

○ 건의사항

-

[서식 제11호]

현 장 조 사 서	
조사 대상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조사 목적	특별지원 신청자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지원여부를 판단하기 위함
조사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조사 담당자	소속 : ○○(시·군) ○○과 직급 : ○○○직 ○급 성명 : ○○○
조사의 범위	○ 위기상황 발생 사유 ○ 소득·재산 사항 등 지원기준 판단 자료
관계 법령	「청소년복지원법 시행령」 제7조
제출자료	○ 기타 위기상황 확인 및 지원결정에 필요한 추가 증빙 서류
기 타	
년 월 일	
기 관 명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